

**축산물고품질생산관리  
기술개발연구센터 세부규정집**

2015. 03. 14.

**축산물고품질생산관리기술개발연구센터**

# 목 차

I . 축산물고품질생산관리기술개발연구센터 규정	1
II . 각종 세부 규정	4
1. 연구평가에 관한 세부규정	4
2. 연구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세부규정	6
3.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8

# 제주대학교 축산물고품질생산관리기술개발연구센터 규정

제정 : 2016. 03. 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대학교 축산물고품질생산관리기술개발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 ②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의 현장 실용화 사업 실시
- ③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관련 심포지움, 학술발표, 국제교류 등의 활성화 및 홍보(교육)사업 실시

**제3조(조직 및 직무대행)** ① 연구센터에 연구개발부, 교육훈련부, 대외협력부, 행정지원부를 둔다.

② 연구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의 지정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각 부에 부장을 두며, 각 부장은 참여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되 필요에 따라 겸임할 수 있다.

⑤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개발부 : 연구사업 방향 설정 및 수행에 관한 업무

2. 교육훈련부 :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3. 대외협력부 : 산학협력 및 대외협력 추진에 관한 업무

4. 행정지원부 : 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한 행정업무 수행

⑥ 행정지원부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⑦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센터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핵심연구책임자 또는 세부연구책임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단, 센터장이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사항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4조(연구원)** 연구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교수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① 센터연구관련분야 교수 : 연구센터와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 자
- ② 센터전임연구교수 : 연구센터와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임용·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 자
- ③ 겸임연구원 : 연구센터와 관련 있는 분야의 대학, 산업체, 연구소의 전문가로 센터장이 위촉한 자
- ④ 책임연구원 : 연구센터와 관련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센터장이 임명한 자
- ⑤ 선임연구원 : 연구센터와 관련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 센터장이 임명한 자
- ⑥ 연구보조원 : 연구센터와 관련 있는 분야의 학사과정 이상에 재학하거나 또는 특수기능 소지자로 센터장이 임명한 자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실시한다.

- ② 센터장은 자체평가 등 연구센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활용담당관을 포함한 연구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센터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를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본 사업의 연차별 사업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센터 사업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 예산 및 결산 심의
  4. 사업과제 발굴 및 기술이전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평가위원회)** ① 연구센터의 사업수행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매년 1회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자 각 1인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센터장은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과 협의 후 핵심 또는 세부과제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세부과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① 연구센터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교내외 인사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본 사업의 연차별 사업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자문위원에 대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연구센터의 연구개발비는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사업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주관기관에서 일괄하여 통합관리하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사용·관리·정산한다.

**제9조(재정)** 연구센터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2. 협력기관 및 민간기관 지원금
3. 주관기관 지원금을 포함한 기타 수입금

**제10조(회계년도)** 연구센터의 회계연도는 12월 2일부터 다음 해 12월 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연구평가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 : 2016. 03. 14.

**제1조(목적)** 이 세부규정은 제주대학교 축산물고품질생산관리기술개발연구센터의 연구비지원 및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회 및 평가방법)** ① 연구센터는 연구실적·계획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매년 1회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담당자 각 1인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③ 자체평가는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과 자체평가기준에 따른다.

**제3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센터장은 핵심 및 세부과제별로 종합·정리된 자체평가의 내용을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취한다.

② 센터장은 핵심 및 세부과제 자체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구분한다.

1. 매우우수 :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
2. 우수 :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고, 평균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3. 보통 : 당초의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하고,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4. 불량 : 당초의 목표달성이 미진하고, 평균점수가 5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5. 매우불량 : 당초의 목표달성이 미진하고,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으로 평가된 과제

③ 센터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 의해 확정·통보된 자체평가결과를 핵심 및 세부과제 책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자체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연구비를 조정·배정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필요할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과 협의 후 평가결과에 따라 핵심 또는 세부과제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세부과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 : 2016. 03. 10.

**제1조(목적)** 축산물고품질생산관리기술개발연구센터 연구비 신청을 위한 연구계획서 및 연구센터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의 보고서 제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차실적·계획서 제출)** 세부 및 협동과제 책임자는 연차실적·계획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하고, 당해연도 연구종료 2개월 전에 센터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사사)** ① 학술논문 발표 시에는 아래와 같이 사사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안))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축산물고품질생산관리기술개발연구센터(과제번호 : 715003-07)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영문표기 (안))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715003-07) from the Research Center for Production Management and Technical Development for High Quality Livestock Products through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Research Center Support Program,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정 : 2016. 03. 10.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축산물고품질생산관리기술개발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의 연구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연구수당”이라 함은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에 참여한 자에게 직접비에서 지급되는 연구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연구과제에 실제로 참여하였거나 지급기준일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로서 연구계획서에 참여연구원(행정요원 및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되어 참여하는 자 등 포함)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 과제책임자가 가용예산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 자로 한다.

**제4조(계상기준)** 연구수당의 계상은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되, 별도규정이 없는 경우 직접비의 20% 이하로 책정한다.

**제5조(지급방법)** ①연구과제책임자(연구단의 경우 세부과제책임자)가 연구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계상기준 내에서, 제3조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연구참여도, 연구성과 및 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②과제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별지 1 서식에 의한 연구수행 기여도 평가를 실시하되, 연구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세부산정기준의 일부를 변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참여연구원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 1인 또는 특정인에게 연구수당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해당과제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거나 연구수당 지급단가, 제한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제6조(지급시기)** 연구수당은 당해 연도 연구시작일 2개월 이후부터 연구종료일 사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구 개시시점에 일괄지급은 불가하다.

**제7조(지급절차)** ① 연구수당 지급신청서와 연구수행 기여도평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청구한다.

② 연구수당은 신청금액 내에서 원천징수 후 참여연구원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부정적 집행)** ① 참여연구원이 아니거나, 당초 계획 및 변경이 되지 않는 인력의 보상, 장려금 지급

②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

③ 참여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현금수령 자필 영수증으로 집행

④ 연구 착수시점에 연구수당 지급

⑤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집행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연구수행 기여도 평가서

### 1. 일반 정보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평가기간	
연구수당 총 예산		금회 지급 신청액	

### 2. 평가 내용

지급대상자	평가(기여) 내용			기여도 합계(%)	금회 지급 신청액(원)	지급금액 (원)
	연구 참여도(50%)	연구 성과(30%)	기타 연구업무(20%)	(A)	(B)	(AXB)
참여연구 원						
	계	0	0	0	0	

※ 기여도 산정 기준 : 연구참여도(참여기간, 참여율, 업무량 등), 연구성과(논문투고, 특허출원, 연구 발표 등), 기타 연구업무(연구수행능력 및 잠재력, 연구수행태도 및 성실성, 연구보조 및 연구과제운영 등)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 산정. 단, 각 항목별 가중치는 연구 책임자가 변경 가능.

